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11. 5. 평창군수 (재무과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 14 .

다. 상 정 일 자 : 1998. 11 . 4 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199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199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재산은 토지취득이 4건 31,698㎡이며, 매각재산은 1건으로 토지 739㎡, 건물 2동 122.2㎡임.

- 취득재산은 도암면청사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 1필지 207㎡, 이효석기념관 조성 8필지 12,913㎡, 봉평궁도장 2필지 15,754㎡, 대화쓰레기매립장 및 진입로 부지 14필지 2,824㎡이고

- 매각재산은 용도폐지된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횡계) 토지 1필지 739㎡, 건물 2동 122.2㎡임

4. 검 토 내 용

가. 199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이 4건 31,698㎡이며, 처분은 1건에 건물2동, 토지 122.2㎡임.

나. 먼저 관계법규 측면에서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계계획안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은 1998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1999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비한 것으로서 대상사업은 도암면 청사 및 도시계획도로부지, 이효석기념관, 봉평궁도장, 대화 쓰레기매립장 및 진입로 조성이며, 매각재산은 현재 용도폐지된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토지와 건물임.

라. 용도폐지된 건물의 매각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1999년도 계획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